



보도자료

2018. 8. 30.

대법원



담당 : 대법원 재판연구관실
 문의 : 공보관실
 전화 : ☎ 3480-1451~3



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

- 각계 의견 제출 내용 포함 -

- 2018. 8. 30.(목) 14: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’ 쟁점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음
 - 대법원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사건(주심 대법관 김재형), 2016도17706 병역법위반 사건(주심 대법관 민유숙),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사건(주심 대법관 박상욱)
- **폭넓은 의견 수렴**을 위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)에 근거하여 **12개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**한 결과,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한 7개 단체의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(전체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가 제출됨)
 - **대한변호사협회**: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적 병역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체제라고 볼 수 없고,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해태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저하여 초래된 문제이므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형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
 - **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**: 개인의 양심 등에 반하는 군복무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사상, 양심,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
 - **국방부**: 현역병 등 다른 병역의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노력 중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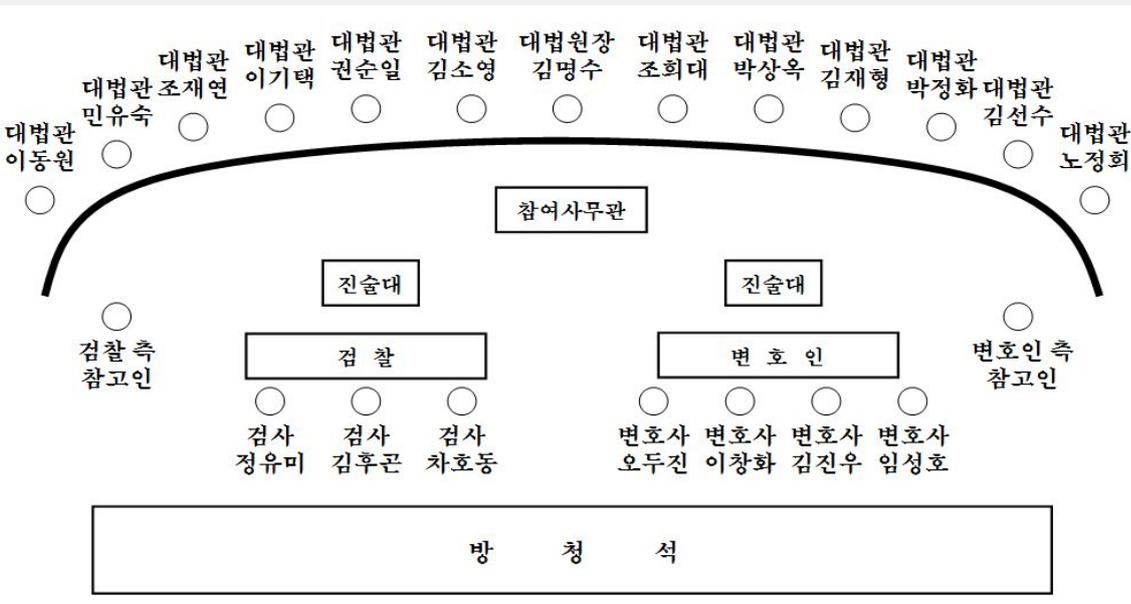
- 병무청: 국방부 의견으로 같음함
 - 한국형사정책연구원: 병역의무 형평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,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존의 이른바 정찰제 처벌은 죄형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
 - 국가인권위원회: 양심적 병역거부와 예비군훈련 거부가 각 법률 규정의 '정당한 사유'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. 과도기에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추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고,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
 - 대한민국제향군인회: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유지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국제기구 권고 등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고,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, 대체복무제 도입과 별개로 기존의 입영거부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어야 함
- 법정에서 진술할 **참고인 3인** → 참고인들은 **서면 의견서**를 제출하였고, 이번 **에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**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
- 장영수 교수(검찰측), 이재승 교수(피고인측), 신기훈 대령(국방부측, 대체입법 등 관련에 한정)
- **실시간 방송 중계**
- 2018. 8. 30.(목) 14:00부터 약 100~120분
 - **네이버 TV, 페이스북 Live, 유튜브, CourTV**
- 판결선고 일정은 변론 이후 전원합의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따로 정하여 공지할 예정임
- **대법원 홈페이지(<http://www.scourt.go.kr>)의 전원합의체 재판안내 게시판**을 통하여 공지 예상됨



○ 변론 진행 순서 등

쟁점 등	구분	시간	발언 담당자
쟁점 정리 등		5분	대법원장
쟁점 1 정당한 사유 해석론 (40~50분)	쌍방 요지변론	5분 (각 2분 30초)	- 검찰: 김후곤 공판송무부장 - 변호인: 오두진 변호사
	재판부 질의응답	30~40분	- 검찰: 김후곤 공판송무부장, 차호동 검사 - 변호인: 오두진, 이창화 변호사 - 참고인: 장영수, 이재승 교수
쟁점 2 국제법적·비교법적 측면 (25~30분)	쌍방 요지변론	5분 (각 2분 30초)	- 검찰: 정유미 부장검사 - 변호인: 김진우 변호사
	재판부 질의응답	20~25분	- 검찰: 정유미 부장검사, 차호동 검사 - 변호인: 오두진, 김진우 변호사 - 참고인: 장영수, 이재승 교수
쟁점 3 병역의무 형평성과 대체복무제 논의 현황 (25~30분)	쌍방 요지변론	5분 (각 2분 30초)	- 검찰: 차호동 검사 - 변호인: 임성호 변호사
	재판부 질의응답	20~25분	- 검찰: 정유미 부장검사, 차호동 검사 - 변호인: 오두진, 임성호 변호사 - 참고인: 신기훈 대령
마무리 변론 (4분)	쌍방 마무리 변론	4분 (각 2분)	- 검찰: 김후곤 공판송무부장 - 변호인: 오두진 변호사

○ 좌석 배치



1) 법률법인 대법원의 재판 중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등 정부기구와 민간의 비정부(NGO) 공공단체 등이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.